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편집자 주 -

1. 주요내용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 매출액 및 상반기 수입액 기준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별표4).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5).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안 제4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을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과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중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체외진단용의약품과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정보·사무기기”를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활용사업자)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재활용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2조제2항 본문 중 “3월말”을 “4월말”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3월말”을 “4월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6월 15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7월 5일”을 “7월 20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폐기물부담금”을 “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별표 4)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1.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종이팩·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식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금속캔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식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발포합성수지의 원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발포합성수지(PSP제외)재질의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 비고 :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규모는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 비고

- 제1호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 제4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라 함은 음료식품류 및 농·축·수산물을 랩, 뚜껑 등으로 단순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하며, 제2호의 음료식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1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 부담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제외한다.
- 제6호에서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그 밖의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 “연간수입액”이라 함은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제1



호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3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를 산출기준(제22조제1항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라 한다)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0.9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장기재활용목표율 - 전년도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 비 고

- (1) “장기재활용목표율”이라 함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말한다.
-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라 함은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1/5	1/4	1/3	1/2	1

- (3) “재활용률”이라 함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계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감경한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4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5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계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4) “조정계수”라 함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비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토사(토사를 포함하되, 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 폐목재)</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라. (생 략)</p> <p>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p> <p>바.·사. (생 략)</p> <p>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p> <p>3.~8. (생 략)</p> <p>〈신 설〉</p> <p>제22조(재활용의무물의 산정·고시 등) ① (생 략)</p> <p>〈신 설〉</p>	<p>제3조(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p> <p>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과 반포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p> <p>1.</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p> <p>체외진단용의약품과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p> <p>바.·사. (현행과 같음)</p> <p>2.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p> <p>3.~8.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재활용사업자)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재활용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법 제2조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p> <p>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p> <p>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p> <p>제22조(재활용의무물의 산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생략)</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제26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② (생략)</p> <p>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연도 7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p> <p>② (생략)</p> <p>제29조(재활용실적조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② (생략) <p>제30조의2(재활용사업자)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p>④ _____ _____ 4월말 _____ _____</p> <p>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26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_____ _____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_____ _____ 4월말 _____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 6월 30일 _____ ④ 제3항에 따른 _____ 7월 20일 _____ 제28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_____ _____ 재활용부과금 _____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재활용실적조사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제22조제4항에 따른 _____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삭제)</p>

현 행	개정안
<p>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p> <p>3.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폐기물관리법」제6조의2제5호에 따른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p> <p>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p> <p>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p> <p>가. 나. (생략)</p> <p>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 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 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사업 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p> <p>2.~4. (생략)</p> <p>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3. (생략)</p> <p>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p> <p>5. (생략)</p>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생략)</p> <p>2. 법 제41조제1항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p> <p>1.~12. (생략)</p> <p>1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p> <p>14.~19. (생략)</p>	<p>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p> <p>—————각 호—————.</p> <p>1. —————각 목—————각 목—————.</p> <p>가. 나. (현행과 같음) (삭 제)</p> <p>2.~4. (현행과 같음)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p> <p>—————.</p> <p>1.~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4항에 따른—————</p> <p>5.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p> <p>1. (현행과 같음)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삭 제)</p> <p>③—————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p> <p>1.~12. (현행과 같음) 13. 제22조제4항에 따른—————</p> <p>14.~19. (현행과 같음)</p>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연도에 재활용의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